

아산탕정 2-A8BL 엘리프 아산탕정 단지내상가 잔여상가 선착순 분양 공고

1. 분양대상

- 소재지 :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세교리 아산탕정 2-A8BL
- 용도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 공고일 : 2023. 06. 21(수)
- 공급규모 : 상가 지상 1층 총 9개 중 8개 점포
- 공급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
- 사업주체 : 한국토지 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지에스건설(주), 동성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신흥디앤씨
- 시공사 : 계룡건설산업(주), 지에스건설(주), 동성건설(주), 이수건설(주), (주)신흥디앤씨
- 홈페이지 : <http://www.엘리프아산탕정.com>
- 분양대행사 : (주)원포올디앤씨

□ 면적 및 분양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구 및 블록	상가동	층별	호수	분양면적(m ²)			공유대지 지분(m ²)	분양 예정가격 (천원)	상가입점 가능(예정) 시기	단지유형/ 세대수 (평형)
					전용	공용	계				
선착순분양대상	아산탕정 2-A8	1	1	101	49.9800	5.1344	55.1144	37.3927	438,100	'25.07 예정	민간참여 공공분양 682세대 (공공분양 682세대)
				102	49.9800	5.1344	55.1144	37.3927	442,700		
				103	49.9800	5.1344	55.1144	37.3927	454,000		
				104	49.9800	5.1344	55.1144	37.3927	465,400		
		2	1	106	49.9800	5.1344	55.1144	37.3927	463,100		
				107	49.9800	5.1344	55.1144	37.3927	454,000		
				108	49.9800	5.1344	55.1144	37.3927	449,500		
				109	49.9800	5.1344	55.1144	37.3927	444,900		

- 당 상가는 입찰 (23.06.13 ~ 14) 후 유찰된 잔여상가 대상 선착순 수의계약 조건입니다.
- 상가(주택)의 입점(입주)일정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법에 따라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기둥이 있는 호실의 전용면적에는 기둥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분할되었으며, 상기 호실별 대지지분은 근린생활시설의 총 대지지분을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또한,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분양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의 증감에 대하여는 상호정산하지 아니함
- 상기 내정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각 호실별 공히 공급계약 및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 체결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포함하며,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함),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 포함된 가격임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입점지정기간내에 완납하여야 하며, 입점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점할 경우는 입점 전까지 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도 완납 후에 입점이 가능합니다)

□ **분양예정금액 (내정가격) 상세**

구분	호수	분양예정가격 (단위 : 원)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합계
상가 1동	101	58,332,647	345,243,048	34,524,305	438,100,000
	102	58,332,647	349,424,866	34,942,487	442,700,000
	103	58,332,647	359,697,594	35,969,759	454,000,000
	104	58,332,647	370,061,230	37,006,123	465,400,000
상가 2동	106	58,332,647	367,970,321	36,797,032	463,100,000
	107	58,332,647	359,697,594	35,969,759	454,000,000
	108	58,332,647	355,606,685	35,560,668	449,500,000
	109	58,332,647	351,424,866	35,142,487	444,900,000

- 선착순 공급시 신청일 오전 10시 전까지 신청 장소(엘리프 아산탕정 견본주택)에 도착한 분이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하며, 오전 10시 이후 도착한 경우 오전 10시 이전 순번을 부여받은 분의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수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은 엘리프 아산탕정 견본주택(☎ 041-534-5347)에서 진행합니다.
- 선착순 수의계약 신청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신청 장소에 도착한 분이 동일 호실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번을 부여하며, 추첨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착순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 계약체결

○ **공통서류**

- 계약자 신분증
-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상가대금의 10%에서 입찰보증금 차감한 금액 납부 후 계약체결)
 - 낙찰이후 계좌번호 별도 안내
- 계약자 인감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 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추가서류**

대리계약시	공통서류 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법인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통,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공동신청시	공동신청인 모두 공통서류를 각각 제출

※ 계약일자에 계약체결 하지 않으실 경우 입찰보증금(입찰신청시 납부한 입찰보증금전액)은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3. 대금납부

계 약 금		중도금		잔 금	
금액	납부기한	금액	납부기한	금액	납부기한
분양가의 10%	계약 체결시	분양가의 5%	2024.10.21	분양가의 85%	입점지정기간 (별도고지) 내

※ **분양대금 납부계좌 계약 시 별도안내**

- 계약금은 현금수납이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기간 이후 선착순 수의계약 시 대금납부조건은 동일하며 납부기일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 시기에 따라 대금납부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는 입찰결과 공고 또는 계약시 안내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별도 고지가 생략되므로 수분양자(계약자)가 스스로 납기에 맞추어 지정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시 반드시 입금계좌를 확인하고 수분양자(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함)
- 분양대금 선납할인율(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한 경우 선납일수만큼 적용) : 현행 연 5.0% (추후 변동가능)
 - 단,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연체료율 : 현행 연 8.5% (추후 변동가능)
 - 지정기한(입점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 미납시 입점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내 분양대금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며, 계약이 해제,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계약예정자는 **건본주택에 게시된 공고문 및 입찰 관련 유의 사항, 도면(분양 홍보물 포함), 분양공고문 및 각종 유의사항등의 내용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 및 단지여건을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상가 **분양팜플렛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평면도, 주변도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사항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의 현장여건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 후 입찰(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정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현행 연 8.5%, 금리변동에 따라 추후 변동가능)
- 선납하신 분양대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실입점일이 분양당시 공고한 입점예정시기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점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 기준일은 변경된 입점지정기간(입점개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입점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점시기는 추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계약자(입점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종별 제한면적 초과시 영업허가 불가 등)은 매수자의 책임으로 일체의 업종보호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가는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명기된 업종에 대해 영업이 가능하며, 규제사항은 건축법에 따릅니다. 단, 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총포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입점이 제한됩니다.
- 상가 건축물 대장작성 및 건물 소유권 이전은 입점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1~3개월 정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담배소매인지정, 학원 등의 일부 업종은 영업 관련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권 내 담배권(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하여 당사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담배권 신청**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공급 신청 전 영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가 주변의 버스(택시) 정류장,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및 중앙분리대 등 각종 공공시설의 위치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해당여부 등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사항은 향후 입점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다수의 상가를 업종 제한 없이 동시 공급함에 따라 동종, 유사업종의 입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점 시 입점 후의 업종 중복에 대해서는 수분양자(입점자) 상호간의 협의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는 영업 포기 등에 따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입점자)는 동 단지 내 상가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분양된 상가에 관한 제반사항(영업 허가, 등록, 인가, 점포관리 등)은 공급받는 자의 책임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당사에서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각 상가의 시설기준은 당사에서 사용검사 받은 상태에서 인수하여야 하며, 영업 및 인·허가에 부가되는 시설(진열대, 간판, 가스배관, 전기, 냉난방 등 추가되는 시설)은 수분양자(입점자)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단지 주변 상업·근생용지, 단독필지 등에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판매시설 등의 건축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지자체 조례 및 규칙과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표기 및 시공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각지자체 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자체의 건축물대장 등록업무지침에 따라 최초건축물대장 등록시 상가의 세부용도(업종)가 지정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입점자)는 세부용도 지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대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건물 소유권 이전과는 별도로 상가의 대지소유권이전은 해당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에 따른 금액 정산을 하지 아니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가의 공유대지는 개산면적이며 지적공부정리 등으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분양자(입점자)는 각 호별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간(옥상, 복도, 화장실 등) 을 전용하거나 무단 점유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점개시일 이전에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미분양상가에 대해서는 당사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재공급할 수 있으며, 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의 복리증진 및 단지여건에 따라 복리시설을 신축하거나 단지의 진입로 및 울타리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상가주변 일부에는 지형여건에 따라 계단, 안내표지판, 화단, 옹벽, 쓰레기 분리수거함, 가감차선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상가의 관리는 수분양자와 입점자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가 자치회나 번영회를 구성하고, 화재보험 계약 및 방화관리자 선임은 분양수분양자(상가 번영회 등)가 직접 하셔야 합니다.
- 수분양자(입점자)는 호 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용과 관련한 사용료 및 부담금,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수분양자(입점자)의 입점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금 및 관리비 또한 함께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는 초기에 상가가 단독 입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최초 수분양자(입점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에 준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유통업무 시설용지 및 팸플릿에 표시되지 않은 유치원 용지, 종교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노외주차장용지, 주유소용지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신축되는 건물의 용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하여지며 단지내 상가와 경쟁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현지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상가관리는 매수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기사용 및 납부주체는 수분양자(입점자)에게 있으므로 입점기간내 개별점포 전기사용 명의를 수분양자(입점자)로 변경하여야 하고, 공용 전기계량기 또한 수분양자(입점자) 대표 명의로 관리될 예정이오니 입점 후 반드시 납부·관리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 기한 이후 입점하는 경우, 잔금 납부 기한 종료일(잔금 납부 기한 이전에 입점하는 경우 실입점일) 다음날부터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분 공과금 포함
- **상가 입점전(인테리어 공사 및 Key 불출 전) 전기 및 상.하수도사용 명의를 계약자로 반드시 변경하여야 하며 미변경 시 입점이 불가합니다.**
- 잔금 완납 후 입점지정기간 개시일부터 열쇠불출이 가능하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입점 후에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창호형태, 마감재, 구조 등의 설계사항은 계약자 취향 및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 전 필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분양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계약 해지 등에 따라 해당 상가를 명도 시 해당 상가를 공급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에는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물가격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시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상가의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계약일 기준 당사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개인용)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 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즉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사업자용)를 발급받아 과세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환급 가능시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도상에 배치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학교용지, 생활체육시설), 공동주택용지 등은 타용도로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점 후 지구 인근 아파트 및 대지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도면의 치수는 설계상의 표기로써 실제 시공 시 기둥·벽체의 두께에 따라 실 사용면적과 전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일 전용면적이라도 실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가주변 조경 및 세부식재, 시설물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가용 승강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영업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각 호별 전용공간 내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상가의 공용부분(화장실, 복도, 청소도구함 등)은 입점자가 공동으로 자체 관리하여야 합니다.
 - 입점지정기간 이후 미입점에 따라 발생하는 전기요금(공용전기로 포함), 공동수도로,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구조변경 및 증개축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관할 지자체에 사전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개조 및 증축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상가의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사용검사 승인 전까지는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계룡엘리프 아산탕정 건본주택(041-534-53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전 지구 및 상가 외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역건

- 상가 전용 주차대수는 상가2에 위치하고 있으며 5대 입니다.
- 환기전용 창호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환기창호 및 환풍기 추가 설치 등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상가 PIT 점검구는 PD내 바닥에 설치되어있습니다.
- 상가내 우편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상가 각 부위별 마감재
 - 건축 내부 벽체 마감 : 수성페인트 (상가 내)
 - 건축 내부 바닥 마감 : 타일 마감(상가 내 및 복도)
 - ※상가복도는 우천시 미끄럼에 유의하여야 함.
 - 건축 외부 벽체 마감 : 석재, 알루미늄 시트
 - 상가 주변 보도바닥 : 블록 포장
- 상가 지붕은 평지붕 형태로 무근콘크리트위 옥상조경으로 마감됩니다.
- 상가는 내단열 공법으로 적용되어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단열재 파손 및 고정철물 고정을 위한 용접시, 화재에 유의해야합니다. 또한 고정철물 고정 시 깊이를 충분히 하여 콘크리트에

고정될 수 있도록 설치가 필요합니다)

-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 및 개구부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옥상 우수 처리를 위한 선홈통이 상가1은 1개소, 상가2는 2개소에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간판 등의 설치 시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2 후면에 생활자원보관소(분리수거장)이 설치됩니다.
- 실별 면적은 시공오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및 마감재 색상은 이미지컷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는 창호구조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 창호(유리)의 설치형상, 크기, 위치는 입면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가에는 방법서터가 설치되지 않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호 세대칸막이는 건식벽체로 되어있으며, 동일인이 인접한 2개 점포 이상을 계약했을 경우에도 사용검사 승인 전 칸막이벽 해체가 불가하며, 필요시 상가 입점 후 계약자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 상가바닥 높이는 주변의 블록포장과 같은 높이로 강설 및 우천시에는 눈 또는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복도부분은 타일 마감으로 우천시 미끄럼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단지 출입구 부근 상가 전면에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상가1,2 옥상과 주출입구 문주가 연결되어 시공됩니다.
- 상가 지붕층에 에어컨 실외기 노출 설치로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상가 주변 단지의 시설물은 계약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가 각 호별 공급되는 가스는 도시가스(LNG)로 공급됩니다.
- 도시가스배관은 상가내 천정 은폐배관이며, 볼밸브+플러그마감으로 이후 가스계량기 및 연결배관 설치는 상가 계약자 설치분입니다.
- 가스배관은 입점 후, 계약자 부담(가스계량기, 연결배관 설치 비용 및 가스시설분담금 등)으로 가스공급자 [JB(주)]에게 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상하수도배관의 세대별 수도미터기(원격검침 가능)는 천정에 설치되며, 배수관이 1개소씩 설치됩니다.
- 급수요금은 상가외부에 설치된 주 계량기의 검침에 의해 상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하고, 호별 별도의 검침 급수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상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량이 포함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급수수전은 각 호별 천정내부에 차단밸브+수도계량기+캡으로 설치되어 호별 검침 지시부가 설치되며 배수시설은 호별 바닥에 설치됩니다.
- 급수배관에 동파예방을 위한 열선이 근생1 PD내 입상배관 구간 및 근생2 복도구간만 설치되고, 열선가동 및 유지 보수와 열선작동에 따른 공동전기로 부담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 에어컨 배관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실외기 설치위치는 옥상 한쪽면에 공동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용공간 내 냉난방 및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으며, 공동화장실에는 복사난방판넬이 설치됩니다.
- 상가에 별도의 난방공급 및 급탕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피트내부에 배수펌프가 설치됩니다.
- 상가 각 호별로 소화기 1대씩 설치 됩니다.
- 상가 1,2 전면 보도구간에서 기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일부구간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2 우측으로 생활자원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상가1,2 후면으로 일부 교목류 식재가 계획되어 있어 시야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1,2 옥상에 조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상가 주변으로 조성된 녹지구간 내 수목 등으로 인해 일부구간 시야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가 주변 조경 및 세부식재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PAD T/R은 상가 인근 녹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중 저압인입)
- 벽체 철거시 기 설치된 분전반 및 스위치, 콘센트 등은 사용 불가하므로 철거 후 전기 시설물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공용 전기설비 사용에 따른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용은 입점자 공동 부담입니다.
- 급수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하여 발열선이 근생1 PD내 입상배관 구간 및 근생2 복도구간 시공되며, 열선 가동 및 유지보수와 열선 작동에 따른 전기료는 입점자 공동 부담으로 관리 소홀에 의한 동파사고는 상가입점자 책임입니다.
- 상가 전기시설은 기본회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추가시설(간판용 타이머 등) 필요시 입점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상가 계약자의 필요에 의한 전기시설물 이전, 교체 및 수정 등은 입점자 부담입니다.
- **입점과 동시에 반드시 계량기를 계약자(입점자) 명의로 변경 하여야 하며, 증설이 필요할 시 계약자(입점자)가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증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 입점 시(인테리어 공사 및 열쇠불출 전) 공용부 전기사용자 명의를 반드시 상가 입점자 대표로 변경하고 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명의 변경 전 공용부 전기사용은 불가합니다. 초기에 상가가 단독 입점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명의 변경없이 사용하여 부과된 공용부 전기요금은 최초 입점자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상가주변에 한전 지중접속함, PAD 변압기,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의 결과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점포 전기공급(집합계량기함~세대분전반)은 단상(220V)으로 결선되어 있습니다.
- 간판용 전원은 개별 점포 전면에 설치됩니다.

• 전력계약 용량

상가-1

구 분	전력계약 용량	비고
공용	12kw	저압인입 (지중)
101호	5kw	
102호	5kw	
103호	5kw	
104호	5kw	
계	32kw	

상가-2

구 분	전력계약 용량	비고
공용	15kw	저압인입 (지중)
105호	5kw	
106호	5kw	
107호	5kw	
108호	5kw	
109호	5kw	
계	40kw	